

본 연구는 우루-이남기나 법과 히브리 성서의 토지법의 안식년과 희년의 사회정의를 비교한다. 우루-이남기나 법의 사회정의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햇불이었던 반면, 히브리 토지법의 사회정의는 인간과 자연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보여주는 찬란한 빛이다. 사회정의의 이슈들은 인간 역사에서 상존하는, 현재에도 중요하고도 열린 문제로 다가온다.

수메르 우루-이눔기나 법과 히브리 법의 사회 정의 고찰

이 종근 | 삼육대

1. 서론

사회 정의는 인류 만고의 최고선(*summum bonum*)이며, 오늘날 인권과 자유, 복지와 평등, 책임과 효율성 등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우루-이눔기나 법(Laws of Uru-inimgina)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개혁법으로 사회 정의 전승의 시초로 일컬어진다.¹⁾ 약 2350 BC 경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의 수메르 도시 국가인 라가시(Lagash)의 왕 우루-이눔기나(Uru-inimgina, 일명 우루카기나[Urukagina], c. 2351-2342 BC)에 의해 수메르어로 작성되었다. 우루-이눔기나는 그 도시 국가의 마지막 왕으로 단명했지만, 그가 입법한 그 법은 오늘날의 모든 법들이 추구하는 사회 정의를 시도했다.

라가시는 230여 년간 존속되다가 인류 문명사의 독재와 억압의 모델이 된 아카드(Akkad)의 살곤 대제(Sargon the Great, c. 2334-2279 BC)

1) J. Oates, *Babylon*, (London: Thames and Hudson, 1986, 1988), 76쪽; I. M. Diakonoff, "The City-States of Sumer," I. M. Diakonoff/Ph. L. Kohl (eds.), *Ancient Mesopotamia*. (A. Kirjanov 옮김), (Chicago/London: Univ. of Chicago Press, 1991), 82쪽.

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본고는 인류 최초의 법전인 수메르의 우루-이남기나 법의 사회 정의 구현에 대한 기록과 수메르 문명의 심장부인 갈대아 우르 출신 아브라함의 후손인 고대 이스라엘의 히브리 토지법에 투영된 사회 정의를 신학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²⁾

2. 우루-이남기나 법

수메르는 도시 국가들(city-states)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원시 시대의 제사와 정치를 통합한 제정 일치(祭政一致)의 지도자를 엔(En/여성일 경우 Entu)이라 불렀다. 세월이 흘러 이들의 지도력이 약화되고, 관료인 행정자/지도자(ensi)가 등장했다. 전쟁 등 국난에 대처하기 위해 이러한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위기를 극복한 뒤 그들은 왕(Lugal)으로 군림하며 그들의 지위를 세습하고, 왕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왕권이 강화되면서 신전을 지배하게 되었지만, 본 법에서 왕은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신전의 유지 보수, 헌물, 건축 및 신전 소유의 땅에 관개 사업을 하는 등 신전의 관심사를 도왔다.³⁾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권과 관료 및 부유층, 그리고 신전들 간에 지배권에 대한 긴장이 생기기 마련이었지만,⁴⁾ 왕궁의 관료들이 신전의 제사장들과 사회 전 영역의 감독관과 지도자들을 관장하고, 모든 활동에 세금을 부과하고 백성의 재산권 등을 착취하는 등 전횡을 일삼게 되었다. 또한 부유층들이 가난한 자들 수탈했다. 이런 사회 구조는 경제적 차별을 가져왔고 일부 시민 계급은 부유한 계급으로부터 빌린 빚을 갚지 못하자 노예로 전락되게 되었다. 이 법의 배경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명한

-
- 2) 이 종근, 「메소포타미아 법사상」(서울: 삼육대학교, 2003), 31-40쪽; M. Weinfeld, *Social Justice in Ancient Israel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Jerusalem: Magnes, 1995), 25-44, 75-96쪽; R. Westbrook, "The Character of Ancient Near Eastern Law," R. Westbrook(ed.), *A History of Ancient Near Eastern Law* vol. 1., (Leiden: Brill, 2003), 6쪽;
- 3) H. Crawford, *Sumer and the Sumerian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1), 20-28쪽; Oates, *Babylon*, 24-28쪽; S. N. Kramer, *The Sumerians: Their History, Culture, and Character*,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87), 74-77쪽; H. Frankfort, *Kingship and the Gods*,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78), 224-230쪽.
- 4) 네프(A. B. Knapp)는 신전, 관료 및 지배계급, 그리고 왕권의 치열한 갈등으로 인한 혼란상이 바벨론의 홍수 설화인 길가메시 서사시(Gilgamesh Epic)의 비극의 주인공 길가메시와 같다고 주장한다. Knapp, *History and Culture of Ancient Western Asia*, 70-72쪽; V. H. Matthews/D. C. Benjamin, *Old Testament Parallels: Laws and Stories from the Ancient Near East*, (NY: Paulist Press, 1991), 169-175쪽.

도시 국가들인 라가시와 움마의 국경선 분쟁(Lagash-Umma Border Conflict, c. 2,400 BC)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수자원과 경작지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으로, 처음에는 라가시가 전쟁에서 이겼지만 북쪽의 움마 지도자가 국경선 합의를 깨고 침범했다. 이 싸움에서 라가시의 수호신인 닌길수(Ningirsu, 엔릴의 아들)⁵⁾와 움마의 수호신인 샤라(Shara, 전쟁의 신)가 이 문제를 신들의 회의(divine council)로 제안하여 엔릴 신이 키시(Kish)의 왕 메살림(Mesalim, c. 2,400 BC)을 통해 국경선 문제를 매듭지었다.⁶⁾ 여기서 라가시가 전쟁으로 인해 왕궁은 인력과 물자를 징수하게 되었다. 왕궁의 관료가 전쟁 목표를 위해 각종 세금을 거두고 일반 백성들의 재산을 동원했다. 전쟁 중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 저항이 덜했지만, 전후에는 관료들의 이러한 관행은 당연히 중단되고 일상으로 복귀해야 했지만, 그들은 관행적인 여러 세금과 부담금을 부과하며 기득권을 계속 연장하고, 일반 백성들과 약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했다.

심지어 장례나 결혼 등에도 높은 세금이 부과되었다. 부유한 관리들이 서민들의 가축과 토지 및 재산의 가격을 강요하고 빼앗았다. 관료 제도가 권력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세제(稅制)가 거대한 관료 계급을 지원했다. 이 법은 고대 세계의 다른 후대의 법들과 마찬가지로 왕권을 세우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당대 관료들과 부유층들의 억압을 개혁하고, 신전의 권위를 세우고, 각종 세금을 감면하며, 노예를 해방하고, 약자의 권익을 보호했다. 이 법에서 먼저 왕이 수메르 만신전의 신들을 위한 치적을 열거한다(전문 1-2). 당시 사회상을 언급하며 세금을 경감시키고, 여러 개혁 조치를 단행하며(전문 8-12), 특히 노예나 과부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에게 약속한다(전문 12).

왕(우루-이님기나)은 수메르 만신전의 3대 신 중 하나이자 바람의 신인 엔릴(Enlil, 님푸르의 주신),⁷⁾ 라가시 도시 국가의 수호신인 닌길수,

5) 라가시 만신전의 신이며 바바(Baba) 여신의 남편이고 니룰타(Ninurta) 신으로도 나타난다. 출산과 식물의 신이며 별명은 논밭의 신이다. 해외의 나라들에 공포를 주는 군사적 신으로도 알려져 있다.

6) J. S. Cooper, *Reconstructing History from Ancient Inscriptions: The Lagash-Umma Border Conflict*, (Maribu: Udena Pub. 1983), 49-50쪽.

7) 엔릴은 바람의 신으로서 수메르 만신전의 최고의 신이며 나라들의 왕(king of lands)이다. 힘있는 존재로 들소(wild ox)로도 불리고(Rimu), 별명은 위대한 산(kur-gal)로도 일컬어 졌다. 무기는 폭

그리고 정의의 여신인 난세(Nanshe, Lagash의 여신)⁸⁾ 등 여러 신들의 신전과 제의를 위한 헌물을 바쳤다. 왕궁 건축과 함께 자신의 선정을 나열한다(전문 1-2). 당시 관리들이 해상에서 배를 통제하고 가축을 다스렸다. 또한 신전은 왕궁 권세자들의 지배하에 들어가 그들의 필요를 위해 이용되었다.

법 형식은 후대의 법들이 취한 전형적인 결의법(決疑法, 조건법 또는 해의법 casuistic law), 혹은 정언법(apodictic law) 형식이 아닌 것이 특징이다. 결의법이란 “어떤 사람이 ... 한다면”(awilum ša/수메르어의 투쿰비[tukum-bi])의 조건절(protasis)과 “...한다”는 결과절(apodosis)을 가진 법 조항이다.⁹⁾ 이 개혁법은 기원전 19세기 드 사르젝(de Sarzec)에 의해 고대 라가시의 일부인 길수(Girsu/현재 Telloh)에서 발견된 점토 판 원추(cones)에 기록되어 있다.¹⁰⁾ 이러한 개혁 조치들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 후 수메르는 아카드의 살곤 대제에게 넘어가고, 대 변혁이 있었으며, 새로운 관행과 제도가 시행되었다.¹¹⁾

1) 전문(前文)¹²⁾

-
- 풍-홍수이며 부친은 하늘 신인 안(An)이고 모친은 닌릴(Ninlil)이다. 운명의 신으로 세상을 주관한다고 일컬어 졌다. 인간을 향해서는 변덕스럽게 행하고 불행과 홍수를 보냈다. M. Lurker, *The Routledge Dictionary of Gods and Goddesses, Devils and Demons*, (NY: Routledge, 1987), 58쪽.
- 8) 라가시의 신으로 지혜의 신인 엔키(Enki)의 딸이며 점과 예언,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여신으로 신의 뜻이 그를 통해 드러난다고 했다. Lurker, *The Routledge Dictionary of Gods and Goddesses, Devils and Demons*, 132쪽.
- 9) J. H. Walton, *Ancient Israelite Literature in Its cultural Context*, 102-105쪽; A. L. Oppenheim, *Ancient Mesopotami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7), 218-219쪽; J. Bottero, *Mesopotamia: Writings, Reasoning, and the Gods*, (Z. Bahrani/M. van De Mieroop 옮김),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92), 158쪽.
- 10) 이 법은 6개의 비문이 3개의 판(版)으로 남아 있다. 5개는 점토판에 기록되었고, 한 개는 장식판에 기록되었다. 본고에서는 Cooper의 역본들 중 서언, 사회의 악습, 개혁조치들을 담고 있는 원추형 점토 1번(Clay cones 1)을 본문으로 택했다. J. S. Cooper, *Sumerian and Akkadian Royal Inscriptions I: Presargonic Inscription*, J. S. Cooper들(eds.), American Oriental Society Translation Series, (New Haven: American Oriental Society, 1986), 70-74쪽; Hallo, “Reforms of Uru-inimgina,” 407-408쪽.
- 11) Knapp, *The History and Culture of Ancient Western Asia and Egypt*, 72쪽. 수메르 문명의 수도인 우르의 멸망은 “우르 멸망에 대한 애가”(Lamentation over the Destruction of Ur)에도 잘 나타나 있다. V. H. Matthews/D. C. Benjamin, *Old Testament Parallels: Laws and Stories from the Ancient Near East*, 169-175쪽; ANET, 455-463쪽.
- 12) 이 종근, 「메소포타미아 법사상」, 34-36쪽. 본 번역은 Cooper, *Sumerian and Akkadian*

1. 엔릴의 전사인 닌길수를 위하여 라가시의 왕 우루-이님기나는 티라시(Tirash)의 왕궁을 건축하고 안타수라(Antasura)를 건설했다.
2. 바우(Ba'u, 라가시의 여신, 닌길수의 부인)의 신전을 건축하고 그녀의 정규 헌물을 위한 찬방(饗房)을 지었고, 우루쿠(Uruku)¹³⁾에서 양털 깎는 우리를 만들었다. 난세를 위해 그는 그녀의 좋아하는 니나두아(Ninadua) 운하를 놓고 그 끝을 먼 해변까지 이르게 했다.
3. 그는 그(닌길수)를 위하여 길수(Girsu)의 벽을 세웠다. 오랜 옛날 생명이 시작된 뒤로부터 그 때에는 사공의 우두머리가 보트를 전유했고, 가축 관리가 나귀를 그리고 가축 관리가 양을 전유했다. 어업 감독관이... 구다(Guda, 하위 성직) 제사장이 암바르(Ambar)에서 곡물 세금을 지불했다.
4. 털 양(wool sheep)의 목자들이 흰 양 때문에 은(세금)을 내었고 조세 사정관, 호곡(號哭) 제사장(chief lamentation priest),¹⁴⁾ 양조자(brewer)와 직장(職長)이 어린양들을 대신하여 은으로 세금을 내었다. 신들의 소들은 통치자의 양과 밭을 갈았고, 신들의 제일 좋은 밭들은 통치자의 양과와 오이 밭이 되었다. 나귀들과 활기찬 소들은 신전 행정자들을 위하여 멩에가 씌워졌지만, 신전 행정자들의 곡물은 통치자의 인사들에 의하여 나누어졌다.
5. 신전 행정자들은 세금으로 아마(亞麻), 단으로 묶은 아마, 동 투구(bronze helmet), 구리 못, 구리로 만든 던지는 무기인 스틱(stick), 광택이 나는 가죽, ... 까마귀의 깃털과...을 (그 장소)에 가지고 가야 했다... 행정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과수원에서 나무를 베었고 과일들을 묶었다. 시신이 장례를 위하여 운구되었을 때 우무시(uhmush, 제사장 그룹)가 맥주 7항아리(140 l), 240개의 빵과, 2울(ul)의 하지(hazi) 곡물, 양모 의복, ...하나의 침대를 취했다... 기술자들은... 을 가졌고 몇 일꾼들은 성문의 세금/임금을 취했다.
6. 통치자의 재산과 통치자의 농토들, 여인 조직의 재산과 여인 조직의 땅, 자녀들의 땅, 자녀들의 재산과 자녀들의 땅들 모두가 인접해 있었다.¹⁵⁾ 관료주의가 닌길수에서 바다까지 활동하고 있었다.

Royal Inscriptions I, 70-74쪽에 따른 것이다. 다른 국역(國譯)은 김 영진, 「율법과 고대근동의 법 연구: 율법과 법전」 (서울: 한울출판사, 2005), 171-172쪽에도 있다.

- 13) 우루쿠(Uruku)는 라가시 도시의 거룩한 지역으로 성스러운 도시라는 의미이다. Hallo, "Reforms of Uru-inimgina," 407쪽, n 8.
- 14) 장례식에서 호곡하는 자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다. Cooper, *Sumerian and Akkadian Royal Inscriptions I*, 73쪽, n 20.
- 15) 관료들의 재산이 통치자, 여인들, 자녀들의 땅으로 확대된 모습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땅이 없었을 정도로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인의 것도 함께 관리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Cooper, *Sumerian and Akkadian Royal Inscriptions I*, 73쪽, n 13.

7. 슈브루갈(자유노동자)이 그의 들의 좁은 끝에 한 우물을 파고자 했을 때에는 이기누두(iginudu) 노동자가 그 일을 위해 동원되었고, 이기누두가 역시 들의 관개 운하의 일에 동원되었다. 이런 것들이 이전 시대의 관행이었다. 엔릴의 전사(戰士)인 닌길수가 우루-이님 가나를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해서 라가시의 왕권을 그에게 허락했을 때 그는 이전 시대의 관습을 고치고 그의 주 닌길수가 그에게 준 명령을 수행했다. 그는 선원들에게 선척(船隻)들에 대한 통제권을 박탈하고 가축 관리자들에게 나귀와 양들에 대한 통제권을 제거했고 어업 감독자들에게 ...에 대한 통제권을 박탈하였다.

8. 그는 저장고의 감독자에게 구다 제사장들의 곡물 세금에 대한 통제권을 박탈하고 흰 양과 어린양을 대신하여 은으로 세금 징수를 책임진 관리들을 제거했다. 그는 신전 행정자들에 의해 왕궁에 세금의 전달을 책임진 관리들을 제거했다. 그는 닌길수를 통치자의 재산과 통치자의 땅에 대한 후견인으로 세웠다; 그는 바우를 여성 조직의 재산과 여성 조직의 땅에 대한 후견인으로 세웠다. 그리고 그는 술샤가나(Shulshagana, 닌길수와 바우 신들의 자녀)를 어린이들의 재산의 후견인으로 세웠다. 닌길수의 지경에서 바다까지 관료들이 활동을 멈추었다. 시신이 장례를 위하여 운구되었을 때 우무시는 맥주 3항아리, 80개의 빵, 하나의 침대와 한 마리의 이끄는 염소를 취한다.

9. 우뭇은 보리 3반(ban 18ℓ)을 취한다. 어떤 사람이 엔키의 갈대¹⁶⁾를 위하여 왔을 때, 우무시(제사장 그룹)가 맥주 4항아리(80ℓ)를, 그의 240개의 빵, 한 울(ul)의 보리(36ℓ)를 취한다; 우뭇은 3반(ban)의 보리(18ℓ)를 취하고; 닌딘기르(nindingir) 여 제사장은 한 여인의 터번(turban)과 향내 나는 기름 1시라(1ℓ)를 취한다. 마른 빵 420개가 빵의 세금이고, 신선한 빵 40개는 식사를 위한 것이며, 신선한 빵 10개는 식탁 빵이다; 빵 5개는 징집병을 위한 것이며 5...그릇과 1사дук(sadug) 그릇의 맥주는 길수(Girsu)의 애곡 가수들을 위한 것이며; 빵 490개, 2...그릇과 1사дук 그릇의 맥주는 라가시의 호곡 가수들을 위한 것이다; 빵 406개와 1...그릇과 맥주 1사дук 그릇은 다른 호곡 가수들을 위한 것이다; 빵 250개와 1...그릇의 맥주는 늙은 부인들을 위한 것이다; 빵 180개와 1...그릇의 맥주는 니나(Nina)의 늙은 남자들을 위한 것이다.¹⁷⁾

10. 일을 하는 이기누두를 위해서는 한 개는 그의 식사 빵이고, 새벽의 그의 빵은 다섯이며 점심의 그의 빵은 하나이며 저녁의 그의

16) 엔키의 갈대는 다른 종류의 특별한 장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Kramer, *Sumerians*, 81 쪽.

17) 늙은 남자와 여자들은 장례식의 호곡과 관련된 자들로 보인다.

빵은 여섯이다; 빵 60개, 맥주 1...그릇과 보리 3반(ban)이 삭부르(sagbur, 호곡 관련되는 일) 직임을 수행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는 짝을 지은 노동자들 위하여 성문의 세금/임금을 폐지하고 기술자들에게 ...을 폐지했다. 행정자들이 더 이상 가난한 자들의 과수원을 노략하지 않았다. 좋은 질의 나귀가 슈브루갈에게 태어나고 그의 식장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서 사기를 원한다”고 할 경우 그는 그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내가 원하는 값을 치르라”고 하든지 혹은 그가 그것을 그로부터 사기를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 식장은 분노로 그를 칠 수 없다.

11. 귀족의 집이 슈브루갈의 집에 인접해 있을 때 그 귀족이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당신에게 사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값을 지불하시오! 내 집은 큰 장소입니다. 그것을 나를 위해 보리로 채우시오”라고 그에게 말하면서 그가 그로부터 그것을 사도록 한다든지 그가(귀족) 그것을 그로부터 사지 못하도록 하든지 간에 그 귀족은 그를 화내어 칠 수 없다. 그가 이렇게 선포했다. 그는 저 노예로 팔린 가족들, 곡물 세금, 보리 공출, 도둑이나 살인 때문에 채무자로 살고 있는 라가시의 거민들을 위하여 부채를 청산했고 면제했다.

12. 우루-이님기나는 엄숙하게 집 없는 사람과 과부를 권세자들에게 결코 넘기지 않겠다고 닌길수에게 약속했다. 같은 해에 그는 닌길수를 위하여 투르길수이투가(Turgirsu'ituka) 운하를 파고 그것의 이전 이름을 제쳐두고 우루-이님기나는 그것을 “닌길수가 넘푸르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그를 위해 이름을 붙였다. 그 운하는 순수하며 그 하상(河床)은 깨끗하다-그것이 항상 흐르는 물을 난세에게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2) 사회 정의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행정 조치/제도를 미샤룸(*mīšarum/mīšarum*)이라 불렀는데, 아카드어로는 키투(*kittu*)와 미샤루(*mīšaru*)/키툼 미샤룸(*kittum umīšarum*)으로 불렸다. 키투라는 말은 카누(*kanu*)에서 나온 말로 ‘확고하게 세우다’는 뜻으로 ‘견고한 것’ 또는 ‘바른 것’을 의미했다. 미샤루는 에세루(*ešeru*)로서 ‘바르게 가다, 규정에 맞다’는 말에서 나왔다. 키툼 미샤룸이란 법과 정의, 진리와 정의, 및 진리와 공정(equity)을 의미한다.¹⁸⁾ 이것들은 보통 “왕이 그 나

18) M. Civil/A. L. Oppenheim들(eds.), *The Chicago Assyrian Dictionary*(이하 CAD) Vol. 8.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57-), 159-71쪽; CAD 10, 116-19쪽; W. von. Soden,

라에 정의를 세웠다(*šarrum mišaram ina mātīm iškun*)”라는 표현으로 사회 질서를 ‘바르게 하는’ 공정한 정의의 조치였다.¹⁹⁾ 미샤룸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정경화 되고 내용은 필사되어 뒤이은 많은 법들의 전형이 되었다.²⁰⁾ 그것은 세금 면제, 노예 해방, 포로 석방, 포로의 귀환, 토지 회복, 파괴된 도시나 신전의 재건, 도량형의 설치 등 왜곡된 관행과 질서를 공정하게 만드는 조치 등이 포함되었다.²¹⁾

미샤룸은 대개 왕위 등극 때나 초기, 또는 재임 중 몇 차례에 걸쳐 이 칙령을 선포했다. 대개 이전의 통치자들에 의해 야기된 여러 문제들을 바로 잡는 목적이었다. 주로 세 가지 형태의 조치를 취했다. 첫째, 관료 조직의 개혁이다. 행정 기구의 재정비로 직분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고 관리들이나 기득권 층의 부정이나 억압 구조를 고치거나 처벌했다. 둘째, 세금 개혁이었다. 문체시되었던 세금, 임대이자 또는 부역을 면제시켰다. 셋째, 노예 해방이었다.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 등이었다.²²⁾ 이것은 고대 바벨론의 왕들의 행정 명령으로 채무의 면제, 노예 해방, 복역의 취소, 토지의 회복 등을 위한 명령이었다. 이러한 것들은 사회의 경제적 기능 부전(不全)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샤룸의 자유와 해방 선언은 수메르어의 NIG. SI. SA인데, ‘어머니에게 돌아가라’는 의미의 의식적 선언인 AMA. RA. GI₄ 를 포함했다. 이것은 또한 아카드어의 안두라룸(*andurārum/durārum*)과 누지의 슈두투(*Šudutu*) 칙령, 그리고 어떤 도시에 대한 세금과 부역의 면제인 키딘누(*kidinnu*)와 같다.²³⁾

Akkadisches Handwörterbuch (이하 *AHW*), (Wiesbaden: Harrassowitz, 1965-1981). 254쪽; Raymond Westbrook, “Mesopotamia: Old Babylonian Period,” R. Westbrook(ed.), *A History of Ancient Near Eastern Law*, Vol. 1. (Leiden: Brill, 2003), 363-365쪽.

19) 이 종근, 「히브리 법사상」, 368쪽; “히브리 성서의 회년과 메소포타미아의 미샤룸 제도,” 「구약논단」 1 (1995): 75-90; R. Westbrook, “Social Justice in the Ancient Near East,” K. D. Irani/M. Silver(eds.), *Social Justice in the Ancient World*. (Westport, CN: Greenwood Press, 1995), 149-163쪽; Weinfeld, *Social Justice in Ancient Israel*, 45-46쪽; idem, “Freedom Proclamations in Egypt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S. Israelite-Groll(ed.), *Pharaonic Egypt: The Bible and Christianity*, (Jerusalem: Magnes Press, 1985), 317쪽.

20) S. Lafont, “Ancient Near Eastern Laws: Continuity and Pluralism,” B. M. Levinson(ed.), *Theory and Method in Biblical and Cuneiform Law: Revision, Interpolation, and Development*,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06), 96-97쪽.

21) Weinfeld, *Social Justice in Ancient Israel*, 25-44쪽.

22) R. VerSteeg, *Early Mesopotamian Law*, 46-47쪽; idem, *Law in Ancient World*, (Durham, NC: Carolina Academic Press, 2002), 3, 19-21, 36쪽.

후대의 메소포타미아 왕들은 이전의 미샤룸 규정들을 활용해서 이 칙령을 발표하곤 했다. 예를 들어 함무라비 왕은 재위 2년, 12년과 33년째에 이를 시행했다. 그의 현손(玄孫)이며 10대 왕인 암미차두카(Ammi-šaduqa, c. 1646-1626 BC)는 재위 10년째에 채무를 면제하고 곡식 분배와 빚 노예들을 해방시켰다. 함무라비와 동시대 왕인 라사(Larsa)의 림신(Rim-Sin, c. 1822-1763 BC)도 3회에 걸쳐(재위 25년, 34년, 그리고 40년 이후) 발표했다.²⁴⁾ 이러한 미샤룸의 일부 요소들이 우르 남부 법과 리피트쉬타르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오늘날과는 다른 배경에서 주어졌지만, 우루-이님기나 법의 사회 정의를 위한 당대 개혁 조치들은 항구적 의미가 있다. 이 법의 미샤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관료 개혁

이 법에서 왕은 관료주의가 당대뿐만 아니라 오래된 관행이었다고 고백했다. 왕궁의 관료들이 나라의 모든 것을 지배했다. 각 분야에서는 관리자나 우두머리가 있었고, 신전의 제사장들까지도 지배하는 왕궁의 관료들이 있었다. 제사장들도 세금을 낼 정도로 관료주의가 신전을 지배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수메르에서 지도자는 제정 일치(祭政一致), 즉 제사장에서 행정자, 그리고 왕으로 발전되었다. 이 법에서는 왕정의 관료 권력과 부유층이 군림하는 것을 보여준다.²⁵⁾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서 관료들이 신전 소유나 각종 활동들에 대해 권위를 남용하고 착취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심지어 신전의 소들이 통치자의 밭을 갈고 신전 소유의 전답이 통치자의 밭이 되고 신전의 가축이나 곡물이 통치자들의 수중에 들어갔다. 물론 이들은 가난한 자들을 약탈했다(전문 4-6). 관료제가 사회의 각 영역을 지배했다. 이러한 모습을 “관료주의가 닌길수에서 바다까지 활동하고 있었다”(전문 6)고 묘

23) R. Westbrook, *Property and the Family in Biblical Law* (JSOTS 11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1), 44쪽.

24) R. Westbrook, “Social Justice in the Ancient Near East,” K. D. Irani/M. Silver들(eds.), *Social Justice in the Ancient World*, (Westport, CN: Greenwood Press, 1995), 158-159쪽; J. J. Finkelstein, “Ammi-šaduqa’s Edict and the Babylonian Law Codes,” 91-104쪽; J. Oates, *Babylon*, 74-76쪽. *ANET*, 526-528쪽; Oates, *Babylon*, 62, 76쪽.

25) Oates, *Babylon*, 24-28쪽; H. Frankfort, *Kingship and the Gods*, 224-30쪽; M. Liverani, “Propaganda,” *ABD* 5(1992), 474-477쪽; Diakonoff, “The City-States of Sumer,” 70-72쪽.

사했다. 그는 관료 조직을 재정비하고, 억압 구조를 없애고, 관료들의 전횡을 개혁했다. 관리자들과 감독관들의 통제권을 박탈했다. 개혁 조치 이후 “넉길수의 지경에서 바다까지 관료들이 활동을 멈추었다”(전문 8)고 했다. 그는 관료들인 통치자들과 부유층의 다양한 가혹 행위를 폐지했다(전문 9-12). 관료들이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을 노예로 넘기지 못하도록 신에게 약속했다. 이것들은 고대 세계에서 약자들을 보호하는 사회정의 전형(典型)이다.

(2) 세금 개혁

왕은 세금/임금을 경감시키고 가난한 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여러 조치들을 시행했다. 제사장 그룹에 가해졌던 세금을 폐지했다. 조세 조정관과 장례식의 울음꾼들인 호곡 가수장 등 전문직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세금을 내었다(전문 4-5). 신전의 행정자들과 제사장들도 여러 종류의 세금을 내었다. 심지어 장례를 위해서도 여러 종류의 물품이 지불되어야만 했다.

신전이 왕궁에 세금을 납부했는데, 세금을 관리하는 관료들을 제거했다. 여러 구실로 각종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개혁 조치들로 인해 세금이 많이 감소된 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열거한다. 관료주의가 활동하고 있었던 시대의 모습을 “시신이 장례를 위하여 운구되었을 때 제사장 그룹 우무시가 맥주 7항아리(140 ℓ), 240개의 빵과, 2울(ul)의 하지(hazi) 곡물, 양모 의복, …하나의 침대를 취했다… 기술자들은… 을 가졌고 몇 일꾼들은 성문의 세금/임금을 취했다”고 했다(전문 5). 또한 다른 부류의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또한 세금을 취했다. 그러나 세금 개혁을 시도한 후 “시신이 장례를 위하여 운구되었을 때 우무시는 맥주 3항아리, 80개의 빵, 하나의 침대와 한 마리의 이끄는 염소를 취한다”고 했다(전문 8-9). 장례 의식에 고대 시대에 곡물과 더불어 사용되었던 맥주가 7항아리에서 3항아리로, 240개의 빵이 80개로 감소되었다고 했다. 이것들은 각각 40%(맥주)와 30%(빵) 이상이 감소된 개혁 조치였다. 위의 두 항목들의 세금/임금이 현저히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혁 이전에 징수되었던 곡물, 양모 의복, 침대 등도 제외되었다. 이것은 대단한 개혁으로 보인다.

(3) 노예 해방

고대 세계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대표적 제도는 미사람의 노예 해방이다. 왕들은 이 제도를 통해서 사회를 공정하게 만들려고 대개 통치 초기에 미사람을 선포했다. 왕은 자신이 라가시 도시 국가의 수호신인 닌길수에 의해 선택되고 왕권을 위임받아 여러 개혁 조치를 통해 신이 “그에게 준 명령을 수행했다”고 선언한다. 이것이 왕권 신수설이다. 이에 근거하여 그는 번영, 질서 그리고 평화를 가져왔다는 선언으로 그의 통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²⁶⁾ 이러한 왕위 선전은 후대의 거의 모든 법들에 나타나는 바, 이것의 대표적 사례가 노예 해방이다.

우루-이남기나의 전철을 따라서 이신 제 1 왕국(First Dynasty of Isin, c. 2017-1794 BC)의 리피트-이쉬타르(c. 1934-1924 BC) 법 전문에도 왕은 노예 신분이 강요되었던 수메르와 아카드의 아들과 딸들에게 해방(AMA. RA. GL₄)을 선언했다. 라가시의 후대 지도자였던 구데아(Gudea, c. 2144-2124 BC)의 실린더와 흉상(Gudea Cylinders B and Gudea Statue B)에도 “노예 소녀들이 진정 그녀의 여주인과 같다; 노예들이 진정 그의 주인 옆에 섰다; 혹은 채권자가 어떤 사람(노예)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기록으로 노예 해방을 기록했다.

암미차두카 칙령(The Edict of Ammisaduqa)에도 빛 노예로 억류된 사람들을 해방하고, 빛과 부역 사항들을 면제하는 특별한 조항이 있다.²⁷⁾ 이 노예 해방의 모티브는 고대 근동 세계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햇불이다. 불우한 환경이나 왜곡된 제도로 인한, 특히 고대 근동에서는 빛으로 인한 노예 신분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제도였다. 물론 이러한 것을 통해 왕권을 확립했다.

3. 히브리 사회 정의

26) 왕권신수설과 왕위선전은 후대의 법들인 우르 남무 법(LU Ai 31-42), 리피트이쉬타르 법(LI 전문 i 1-37) 그리고 함무라비 법(HL 전문 i 27-49)에도 나온다. E. Nardoni, *Rise Up, O Judge: a Study of Justice in the Biblical World*, (S. Ch. Martin 옮김), (Peabody, MA: Hendrickson, 2004), 1-20쪽; J. Høgenhaven, “Prophecy and Propaganda: Aspects of Political and Religious Reasoning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JSOT* 1 (1989), 125-141쪽.

27) R. Westbrook, *Property and Family*, 44쪽; 참조 R. E. Averbeck, “A Preliminary Study of Ritual and Structure in the Cylinders of Gudea,” 705-6, 718-19쪽; F. Thureau-Dangin, *Sumerischen und Akkadischen Königsinschriften*, 68-69, 136-38쪽; *ANET*, 159쪽.

히브리 성서는 사회 정의를 지향한다. 사회 정의는 법과 정의(*mišpāt ûṣəḏāqāh*)에 기초한다.²⁸⁾ 그것은 메소포타미아의 미샤룸처럼 공정하고 의로운 사회개혁조치(*darôr*)를 말한다. 법과 정의는 중언법(*hendiadys*)으로 사용되었고, 이것이 히브리 성서의 모든 법과 제도의 목적이다. 법(*mišpāt*)은 규범(*norm*)을 따라 올바른 판단력으로 행동하고 상식과 순리를 따르라는 것을 의미하고 정의(*ṣəḏāqāh*)는 모든 법적 및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성취하고, 모든 관계에서 올바르게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히브리 성서는 “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흘리라고 권고한다(암 5: 25). 마치 법(法)이란 글자가 원래 물(水)과 같이 공평하게 죄를 조사하여 바르지 않는 자를 제거한다(去)는 뜻이 있는 것처럼 순리를 따르라는 말이다. 한 마디로 설명하면 이것이 공평성, 민주성, 복지 등의 보편적 가치와 공동선을 따라 사회 정의를 실현하라는 하늘의 부름이다. 이것은 공동체의 법질서가 확립되고 기회와 혜택 및 복지가 골고루 시행되게 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과 보응이 경고되어 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 또는 법과 자비는 쌍둥이 자매라고도 불리어진다(시 89: 14; 미 6: 8). 이는 권력과 기회 및 특권이 분산되어야 하고, 법치와 공평성이 보장되며,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게 하라는 것이다.²⁹⁾

출애굽의 사회적 이상이란 독재 왕정의 토지, 부와 종교의 전횡(專橫)을 개혁하고 권력과 부를 분산하는 것이었다. 토지를 12지파에 분배하고, 국가와 민족의 권력을 왕, 제사장, 지파의 장로들 및 백성 등으로 분산시켰으며, 종교와 정치를 분리했다. 오직 레위 지파만이 종교적 직무를 감당했다. 이러한 것들은 만고불변의 사회 정의의 실현이며, 법과 정의의 대 헌장과도 같다.³⁰⁾ 이스라엘의 종교와 모든 제도들에는 이러

28) 와인펠드(Weinfeld)는 법과 정의의 원칙을 신의 영역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정의를 우주에 세우셨다.

둘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정의(율법)를 주시려고 자신을 계시하셨다.

셋째, 하나님이 미래에 “법과 정의”로 민족들을 심판하시려고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다.

Weinfeld, *Social Justice in Ancient Israel*, 5쪽.

29) 이 종근, 「히브리 사상」, 372-378쪽; L. Jacobs, “Righteousness,” *EJ* 14, 179-183쪽; J. J. Scullion, “Righteousness,” *ABD* 5, 724-736쪽.

30) M. Weinfeld, *Justice and Righteousness in Israel and the Nations: Equality a Freedom in Ancient Israel in Light of Social Justice in Ancient Near East*, (Jerusalem: Magnes Press, 1985); idem, “Justice and Righteousness mshpt wtsdqh the Expression and its Meaning,”

한 신학적 모티브가 내재되어 있다. 이런 사회 정의의 이상을 히브리 토지법의 안식년(Sabbatical year)과 희년(jubilee)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1) 안식년의 사회 정의

(1) 토지의 휴식

안식년은 매주 제 칠일 안식일의 원칙을 7년 단위로 확대 적용한 것으로 토지에 안식을 주어 휴경(休耕)하는 해를 말한다(출 23: 10-11; 레 25: 18-22; 참조 신 25: 7-11). 명칭 자체도 '토지의 안식'으로, 토지가 안식을 지킬 것이라는 말에서 나왔다(레 25: 6).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레 25: 2);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 때에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린다"(레 26: 34-35) 등의 표현대로 토지가 쉬고 안식을 누리는 해라는 뜻이다.³¹⁾

이 해에는 파종이나 수확, 및 스스로 난 곡물을 거두는 것도 금지되었다. 마치 오늘날 토지의 고갈을 막기 위해 윤작(輪作)을 하는 방식과 유사한 고대의 제도이다. 안식년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을 위한 땅의 휴식'으로 땅의 경작을 중지하는 것이다. 6년 간 경작한 후 제 7년에는 갈지 말고 묵혀 두라는 토지의 엄숙한 휴식 명령이다. 심지어 랍비들은 부주의로 어떤 것을 심었을 경우, 그것을 뽑아버리도록 했다. 모든 땅의 경작이 금지되는 토지 휴식의 중요 근거는 하나님은 땅의 주인이시고, 인간은 관리인 및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상이다. 특히 법 자체에 '여호와 앞에' 땅이 안식하고, 하나님께 대한 관계에서 토지가 쉬어야 했다. 이것은 토지도 내재적으로 안식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마치 안식일에서 인간이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행하고 제 칠일에 안식하라고 명하신 것 같이(출 20: 8-11), 안식년에는 토지가 안식을 지키라는 것이다.³²⁾ 자연의 상징인 토지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의 발현이다. 오

H. G. Reventlow/Y. Hoffman(eds.), *Justice and Righteousness: Biblical Themes and their Influence*, (Sheffield: JSOT Press, 1992), 228-246쪽.

31) 이 종근, 「히브리 법사상」, 358-364쪽; 박 동현, "그 땅이 안식하도록 하라," 「기독교사상」(대 한기독교서회, 1996, 2), 222-231쪽; N. P. Lemche, "The Manumission of Slave - The Fallow Year - The Sabbatical Year - The Yobel Year," *VT* 26 (1979), 38-59쪽; J. Morgenstern, "Sabbatical Year and the Jubilee in the Pentateuchal Laws and Their Ancient Near Eastern Background," T. Veijola(ed.), *the Law in the Bible and its Environmen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0), 39-62쪽; C. J. H. Wright, "Sabbatical Year," *ABD* 5(1992), 857-861쪽.

늘날 현 지구성의 인류가 씨름하고 있는 생태 보존의 신학이 포함되어 있다. 자연 즉 토지도 사람처럼 삶의 질서인 쉼을 누리라는 것이다. 이로써 자연과 인간의 관계 회복이 보장되는 제도이다.

(2) 빛의 면제

안식년은 빛을 탕감하는 의미로 면제 년(*šamittah*, year of remission)이라고도 불렀다(신 15: 1-3, 9; 31: 10). 고대 근동의 척박한 기후에서 생존을 위해 곡식을 빌리고, 흉작으로 인해 빛이 누적되어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던 시대에 공동체의 안녕과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이상적인 사회 제도였다. 면제 년이란 토지의 안식년에도 쓰이고 신 15장에서는 노예의 해방에도 같이 사용된다. 즉 토지의 휴식과 빛의 탕감이 동일한 안식년의 중요 조항임을 보여준다. 고대 근동에서의 빛에 대해서는 대략 20-33%(누지의 경우 50%)의 이자가 부과되었다.³³⁾

특히 종자에 대해서 빛을 지게 되었을 경우, 이것을 바로 갚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 기후 특별히 강수량에 따라 농작의 형편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경우에도 있는 것처럼 기근이 수년 동안 계속될 때는 갚을 형편이 못되어 빛의 부담이 증대되었다. 이것은 결국 가족이나 토지를 팔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로 채무자를 내 몰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불균형의 근원 중 하나를 안식년 제도에서 해결했다. 매 6년 동안 빛에 쪼들리는 약자들에게 이러한 규정은 복된 제도였다.

(3) 율법의 낭독과 공동체 회복

율법의 낭독은 고대 계약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였다(신 31: 10-12).

- 32) 안식년 준수에 대한 명령은 여러 있지만, 그것의 준수에 관한 자료는 성서에 없다. 알렉산더 대왕(Alexander the Great)과 줄리우스 시저(Julius Caesar) 황제는 안식년에 유대인에게 납세 면제를 해준 사실이 있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분명히 안식년을 지켰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B. Z. Wacholder, "Sabbatical Year," *IDBS*, (1976), 762-763쪽; J. B. Payne, "Sabbatical Year," *ISBE*, 4(1988), 252-53쪽; Josephus, *Antiquities* 11. 8. 6; 11. 10. 6; 13. 8. 1; 14. 16. 2; 15. 1. 2.; idem, *Wars* 1. 2. 4; R. North, "Maccabean Sabbath Year," *Biblica* 34 (1953), 501-515쪽.
- 33) C. Zaccagnini, "Mesopotamia: Nuzi," R. Westbrook(ed.), *A History of Ancient Near Eastern Law I*, (Leiden/Boston: Brill, 2003), 607쪽; R. Westbrook/R. Jasnow(eds.), *Security for Debt in Ancient Near Eastern Law*, (Leiden/Boston: Brill, 2001); G. C. Chirichigno, *Debt slavery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Sheffield: JSOT Press, 1993).

안식년의 초막절에는 율법을 낭독하여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며 율법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러한 율법 낭독은 고대 히타이트 법의 낭독 조항과 비슷하다. 고대 히타이트에는 계약 쌍방간에는 종종 공적으로 율법을 낭독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³⁴⁾ 히타이트 법에는 매 3년마다 율법의 낭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안식년에 행하여지기 때문에 6년만의 기간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율법의 낭독은 히브리 신앙의 중요 기초였다. 출애굽 시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고 했다(출 24: 7). 여호수아도 백성들 앞에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여 듣게 했다(수 8: 34-35). 히브리 사상에서 율법을 듣는 것은 곧 율법의 순종을 의미했다. 그래서 면제 년에 모든 가족이나 공동체가 재회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토라는 율법의 낭독을 의무화했다. 이 주기적 율법의 낭독이야말로 고대 이스라엘 신앙의 근간이며, 공동체 회복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었다(느 8: 3, 8, 18; 9: 3; 13: 1).

(4) 안식년의 축복

안식년의 소출은 땅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며, 그 남은 것은 들짐승도 그 해의 축복에 동참하는 인도적인 면을 볼 수 있다. 스스로 난 안식년의 소산물은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특별히 이러한 축복에 참여해야 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배어 있다. 안식년 땅의 휴경으로 인한 염려에 대해서, 제 6년에 수확한 것을 3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풍성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 그 수확이 제 9년에까지 이르도록 하신다는 것이다(레 25: 21-22).

매 7년 주기로 토지를 쉬게 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편만한 관습이지만, 백성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은 히브리 안식년 법의 특징이다. 물론 토지의 안식은 오늘날 생태학적으로 볼 때, 환경 보호라는 놀라운 측면이 있다. 계속적인 경작으로 토지는 생산성이 감소되고 토지의 영양분이 고갈될 소지가 있었다. 그래서 안식년의 토지 휴경이야말로 토지의 소출을 증대하고 미래의 생산성을 보장하는 장치이다.³⁵⁾

34) 고대 히타이트 증주권 조약 문서에는 “항상 끊임없이(always and constantly)” 미타니(Mittani) 왕 앞에 조약 문서를 낭독하도록 규정했다. M. Weinfeld,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stic School*,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2), 64쪽 n. 3.

안식년은 고대 시대 삶의 질이 보장되는 해였고, 자유와 인권 그리고 평화의 기간이었다. 인간 사회의 지평을 열어줄 수 있는 제도이다. 한 해 동안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 단위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영적 축복 속에 일정 기간을 보내는 것은 참으로 보람된 경험이 될 것이다. 이것이 법과 정의의 실현을 위한 기초가 된다.

2) 희년의 사회 정의

희년은 안식일과 안식년 두 제도들의 더 깊고 넓은 적용이다(레 25: 8-17). 안식년과 같이 땅이 경작되지 않고, 그 해의 소산물은 모든 이들을 위한 양식이 되었다. 희년은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뒤의 해를 말한다.

(1) 토지 회복

희년은 토지를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희년의 나팔 소리에 새로운 사회 질서가 시작된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찌라”(레 25: 13). 각각 조상에게서 유업으로 받은 기업(토지)을 회복하라는 명령이다. 희년에 선포된 자유는 바로 모든 부채가 면제되고, 조상으로부터 유업으로 물려받은 타인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것을 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다. 인간 사회의 다른 것에 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으로 재산을 회복해 주는 자비의 규정이다.³⁵⁾ 특히 조상의 유업으로 돌아가는 모티브는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다(레 25: 10, 13). 이것은 토지에 대한 신성 불가침의 권리를 나타낸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조상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팔 수밖에 없을 때, 노예 제도에서와 같이 잃어버린 가산을 회복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절차가 있었다(레 25: 25-28).

희년에는 파종이 금지되고, 스스로 난 수확물을 거두지도 않았다. 또한

35) N. M. Sarna, *Exodu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143-44쪽; D. C. Hopkins, *The Highlands of Canaan: Agricultural Life in the Early Iron Age*, (Sheffield, England/Decatur, GA: Almond, 1985), 192-195, 200-202쪽; M. Noth, *Exodus*, (S. Bowden 옮김),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6), 189-190쪽.
36) M. Weinfeld, “Freedom Proclamations in Egypt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S. Israelite-Groll(ed.), *Pharonic Egypt: The Bible and Christianity*, (Jerusalem: Magnes Press, 1985), 317쪽.

다스리지 않은 포도를 거두지도 않았다. 소출은 가난한 자들과 짐승들에게 자유로이 제공되었다. 이는 안식년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여기서 희년 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이것을 시행하라고 권고한다.

(2) 하나님의 토지 소유권

희년 법은 하나님을 토지의 소유주로 선포하며,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나그네로서 소작인/임차인으로 규정한다. 이스라엘에서의 토지는 인간에게 사용권(*usufruct*)이 주어졌고 끈고한 경우 양도할 수 있었지만, 영영히 매매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³⁷⁾ 이 희년 규정에는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이익을 보는 자들에 의해 토지 축적을 막아 균형을 잡히게 하는 제도가 내포되어 있다. 토지는 원래의 가족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규정 하에 놓여 있었다(*g'lh*).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야훼 소유의 땅에서 거류하는 청지기로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보호 하에 있어야 함을 의미했다.

(3) 노예의 해방(*manumission*)과 빛의 먼제

희년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한다. 중요 관심 사항 중의 하나는 노예 해방이다. 양각 나팔이 울리고 전국 각지로 종들과 메였던 자들이 돌아가는 자유의 해였다. 대 속죄일인 티시리월 10일에 선포되었다. 모든 민족이 죄용서의 축복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이었다.

이 해는 인간 삶의 해방, 자유, 평등,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신앙 주권이 선포되는 날이다. 이 희년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들어올린 미샤람의 햇불과도 같이, 대 속죄일에 나팔 소리와 함께 자유가 전국에 걸쳐 선포된다. 이것은 가족을 위한 하나의 새로운 이상을 제시하는데,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균등하게 돌봄을 받고, 그들 자신의 땅에서 삶을 향유할 권리를 부여받은 사실을 천명하는 것이다. 노예 해방

37) M. Weinfeld, "Sabbatical Year and Jubilee in the Pentateuchal Laws and their Ancient Near Eastern background," T. Veijola(ed.), *Law in the Bible and in its Environmen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0), 58-59쪽; B. A. Levine, *Leviticus* (The JPS Torah Commentary), (NY: The Jewish Pub. Society, 1989), 174; *CAD*, 16(1991), 93-94쪽.

의 당위성은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하나님의 구원에 있었다.³⁸⁾ 선지자들은 이것에 근거해서 죄와 억압, 독재자의 횡포에 대하여 엄중한 항의와 심판을 선고했다(삼상 8: 9-17; 삼하 12: 1-15; 왕상 21: 17-22; 대하 26: 16-21).³⁹⁾

희년의 근본 취지는 자유, 평등, 그리고 정의이다. 희년은 귀성(歸省)이며, 과거와의 화해이고, 미래를 위한 새 출발이었다. 이것은 사회 정의와 복지의 이상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빈익빈 부익부를 막고 공평한 사회를 지향했다.

5. 결론

메소포타미아와 히브리 양 문명은 “유사한 사회 및 정치적 구조, 공통의 사법 전승, 그리고 사회 정의에 대한 공통의 견해”를 공유했지만,⁴⁰⁾ 성서는 영감과 계시의 특별한 과정을 거쳐 주어졌다. 성서 기별들의 원만한 이해를 위해서는 고대 근동의 신학적 배경에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⁴¹⁾

우루-이남기나 법은 그 행위의 주도권이 인간 왕에 달려 있었다. 또한 인간적인 치적 중심으로 편찬되었다. 반면 성서의 안식년과 희년은 인간에 의한 법의 선포나 주도가 아닌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에 의한 신적 명령(divine command)이었다. 우루-이남기나의 경우는 그 시행의 주기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에 비해, 히브리 법은 매 7년(안식년) 혹은 50년(희년)의 주기성(cycle)이 강조된다. 희년의 주요 강조점이 일곱 번의 안식년 다음 50년째라는 주기에 기초하고, 안식년은 제 칠일이라는 일주일의 주기를 년(年)으로 확대한 것이다.

38) 이스라엘에서의 노예는 6년 복역 후에는 해방되었던 반면, 함무라비 법에는 3년 일을 시킨 뒤 놓아 주었다. 김 영진은 바벨론 사회가 경제가 발전하여 기본적으로 노동력 제공을 통해 빚을 갚을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영진, 「율법과 고대근동의 법 연구: 율법과 법전」, 41쪽.

39) D. F. Payne, “King,” *ISBE* 3(1988), 20-23쪽; K. W. Whitelam, “King and Kingdom,” *ABD* 4(1992), 40-48쪽.

40) R. Westbrook, “Social Justice in the Ancient Near East,” 158쪽.

41) 고대 세계에서의 문화 전파(cultural diffusion)는 여러 다양성과 함께 직접 연계(direct connection), 중계적 연관(mediated connection), 공동 자원원(common source), 유사 전승(common tradition) 등으로 유사성을 가진다. 또한 인간성의 내재적 유사성(phenomenological/typological similarity) 때문에 유사성을 공유하게 된다. K. L. Sparks, *Ancient Texts for the Study of the Hebrew Bible: A Guide to the Background Literature*, (Peabody, MA: Hendrickson Pub. 2005), 4-5쪽.

우루-이넘기나는 법의 목적이 왕의 치적을 알리는 성격인 반면, 희년 법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특히 희년 법의 요체는 토지의 신적 소유권(divine ownership)에 기초하여 인간은 땅에서 청지기로 인간과 자연을 돌보라는 것이다.

양 법 모두 사회 정의 구현이라는 만고의 공동선(*bonum commune*)을 지향하고 있다. 수메르의 최초 법은 당시 사회가 직면하고 있던 사회 문제를 개선하려는 시도였다. 인간 사회는 어디에서든지 가난과 부의 편차로 인한 문제를 안고 씨름했다. 비록 단명했지만 우루-이넘기나는 개혁 조치들을 통해 관료 조직과 부유층들의 전횡과 억압을 막고, 세금을 경감시키며 노예들을 해방시켰다. 이러한 것들은 궁극적으로 왕권의 강화와 사회 안정을 목표로 했지만, 우루-이넘기나 법은 시대 상황에 대한 사회 정의의 방향을 제시한다.

수메르 문명의 요람인 갈대아 우르 출신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고대 이스라엘이 수메르 우루-이넘기나 법이 지향했던 사회 정의를 출애굽 이후 고대 근동의 십자로였던 팔레스타인에서 아훼 하나님의 유일신 종교와 신앙에서 활짝 꽃피운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기득권 층의 전횡과 억압, 세금 개혁, 그리고 노예 해방의 당대의 사회 정의가 히브리 법에서 자유와 해방, 평등, 화해와 회복, 그리고 미래를 향한 새 출발 등의 생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티프로 전환했다. 우루-이넘기나 법의 사회 정의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의 햇불이었지만, 히브리 법의 사회 정의는 고난받는 인류와 자연을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보여주는 밝은 빛이다. 사회 정의의 이슈는 인간 역사에 상존하는, 심지어 현재에도 계속되는 미결의 과제이다.

6. 참고문헌

- 김 영진. 「율법과 고대근동의 법 연구: 율법과 법전」 (서울: 한울출판사, 2005).
이 중근, 「메소포타미아 법사상」 (서울: 삼육대학교 출판부, 2003).
Cooper, J. S. *Sumerian and Akkadian Royal Inscriptions I: Presargonic Inscription*, J. S. Cooper들(eds.), *American Oriental Society Translation Series*, (New Haven: American Oriental Society, 1986).
_____, *Reconstructing History from Ancient Inscriptions: The Lagash-Umma Border Conflict*, (Maribu: Udena Pub. 1983).

- Crawford, H, *Sumer and the Sumerian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1).
- Gossai, H. *Justice, Righteousness and the Social Critique of the Eighth-century Prophets*, (NY: P. Lang, 1993).
- Kramer, S. N. *The Sumerians: Their History, Culture, and Character*,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87).
- VerSteeg, R. *Early Mesopotamian Law*, (Durham, NC: Carolina Academic Press, 2000).
- _____, *Law in Ancient World*, (Durham, NC: Carolina Academic Press, 2002).
- Weinfeld, M., "Freedom Proclamations in Egypt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S. Israelite-Groll(ed.), *Pharonic Egypt: The Bible and Christianity*, (Jerusalem: Magnes Press, 1985).
- _____, *Justice and Righteousness in Israel and the Nations: Equality a Freedom in Ancient Israel in Light of Social Justice in Ancient Near East*, (Jerusalem: Magnes Press, 1985).
- _____, "Sabbatical Year and Jubilee in the Pentateuchal Laws and their Ancient Near Eastern background," *Law in the Bible and in its Environment*, T. Veijola (옮김).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0), 58-59쪽.
- _____, *Social Justice in Ancient Israel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Jerusalem: Magnes, 1995).
- Westbrook, R., "The Character of Ancient Near Eastern Law," R. Westbrook(ed.), *A History of Ancient Near Eastern Law*, Vol. 1. (Leiden/ Boston: Brill, 2003), 6쪽.
- _____(ed.), *A History of Ancient Near Eastern Law*, (Leiden/ Boston: Brill, 2003).
- _____, "Social Justice in the Ancient Near East," K. D. Irani/M. Silver들(eds.), *Social Justice in the Ancient World*, (Westport, CN: Greenwood Press, 1995), 158-159쪽.

검색어

우루-이님기나 • 우루카기나 • 사회정의 • 법과 정의 • 미샤름 • 안식년 • 희년

투고일: 2008년 2월 5일

심사일: 2008년 5월 23일

게재확정일: 2008년 6월 8일

Theological Implication on Social Justice in the Sumerian Laws of Uruinimgina and Hebrew Laws

Jong-Keun Lee, Th. 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Sahmyook University

The laws of Uruinimgina is the oldest and first legal collections that concern social justice in the ancient Near East, though not given in casuistic form. Urinimgina/ Urukagina (c. 2351-2342 BC) was the ruler of Lagash. His reforms became the backbone of *mīšarum* in Akkadian later, which includes three types of provisions: 1) adjustments to royal administrative machinery, regulating and abolishing official malpractices and extortion, 2) fixing and reducing of taxes for various activities, 3) manumission of slaves, releasing debt-slaves.

The law lists royal propaganda which he did for gods and temples based on divine election by Ningirsu, the tutelary deity of the city to be the king and to establish the divine laws. He reformed the bureaucracy not to oppress and extort the people, and reduced and abolished various taxes, declaring the temple estates are divine property. He made a compact with the patron deity of Lagash not to allow marginals, widows and orphans to be handed over to the rich. It seems that the laws is geared to solidification of royal power through

social reforms.

The motif of social justice is well attested in all Hebrew religion and institutions. Abraham, the father of Hebrew nation, came from Ur, the cradle of Sumerian culture in Mesopotamia. Lagash was a city state of Sumerian civilization, which is located in southern Mesopotamia together with Ur. The Laws of Uruinimgina set some directions of reforms for social justice.

The spirit and meaning of social justice in the Laws of Uruinimgina is well expanded and implemented thoroughly in the later Hebrew culture. Exodus is the call for reform against Egyptian model of despotism and monopoly of riches and power: the land was distributed to 12 tribes; national powers are dispersed to kings, priests, elders and the people. Religion and cultic matters are absolutely in the hands of the Levites.

The motif of social justice is the foundation of all Hebrew laws, aiming to provide the quality of life to the poor in the land. Sabbatical year stipulates the rest of land, remission of debt, and reading of Torah with abundant blessing from God on the seventh year cycle, while the Jubilee commands the return of land to original owners, release of slaves, and remission of debt based on divine ownership of the land every fiftieth years. The social justice in land laws is geared to freedom, emancipation, equality, reconciliation, and restoration with new start for life.

The social justice in Sumerian laws by Uruinimgina is a torch light in ancient Mesopotamia, while that of land laws in Hebrew Bible seems to be bright shining light which shows divine care for both humanity and the nature. The issues of social justice continue evermore in human history, an open question even today.

Keywords

Uruinimgina • Urukagina • Social justice
justice and righteousness • misharum/ mišarum
Sabbatical year • Jubilee